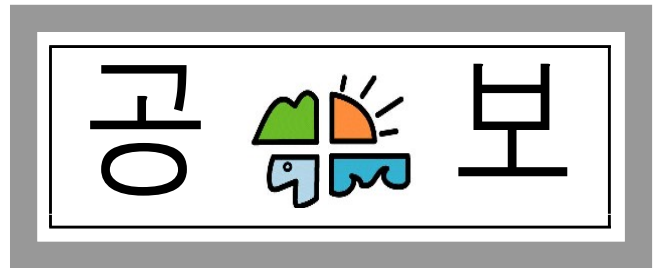


속 초 시

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.

선	기 관 의 장
람	



제1247호 2020년 2월 14일(금)

고 시

-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고시 2
-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고시 4
- 속초 도시관리계획(도로: 소로 2-27호선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.. 10

공 고

- 건축허가(신고)시 지정하는 도로 지정 공고 11

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고시

아시아신탁(주) 대표 배일규가 시행하는 속초시 조양동 공동주택 신축공사의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신청에 대하여 「주택법」 제15조, 「주택법 시행령」 제27조 및 「주택법 시행규칙」 제12조, 제13조에 따라 사업계획변경승인 하였기에 「주택법」 제15조제6항 및 「주택법 시행령」 제30조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20년 2월 14일

속 초 시 장

1. 사업명칭 : 속초시 조양동 공동주택 신축공사
2. 사업시행자
가. 사업시행자 명칭 및 대표자
- 아시아신탁(주) 대표 배일규
나. 주 소 :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416, 13층(대치동, 케이티앤지타워)
3. 사업위치 : 강원도 속초시 조양동 415 외 73필지
4. 사업개요

사업종류	사 업 내 용	사 업 비	비 고
분양주택	○ 사업면적 : 35,056.00㎡ ○ 대지면적 : 27,023.00㎡ ○ 건축연면적 - 당 초 : 92,474.45㎡ - 변 경 : 92,286.16㎡ ○ 건설규모 : 아파트 2/16~29층 6개동 578세대 외 부대·복리 시설	195,817,789천원	

5. 사업시행기간 : 2019.11.01. ~ 2022.05.01.(예정)

6. 다른 법률의 의제사항

가. 「건축법」 제11조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

7. 관계서류는 속초시청 건축과(☎033-639-2773)에 비치하여 일반인이 열람하게 합니다.

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고시

「주택법」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고 「주택법」 제15조제6항 및 「같은 법 시행령」 제30조제5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20년 2월 12일

속 초 시 장

1. 사업명칭 : 강원도 속초시 동명동 3-2지구 공동주택 신축공사
2. 사업시행자
가. 사업시행자 명칭 및 대표자 : 주식회사 대동주택 대표 오남호
나. 주소 : 강원도 속초시 동해대로 4236, 아남프라자 1105호(교동)
3. 사업위치 : 속초시 동명동 464 외 18필지
4. 사업개요

사업종류	사 업 내 용	사 업 비	비 고
분양주택	○ 대지면적 : 2,348m ² ○ 건축연면적 : 29,410.14m ² ○ 주 용 도 : 공동주택(아파트) ○ 층 수 : 지하5층 / 지상36층 ○ 세 대 수 : 169세대	81,853,779천원	-

5. 사업시행기간 : 2020. 4. 20. ~ 2023. 5. 1.(예정)
6. 다른 법률의 의제사항

가. 건축법 제11조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

나.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(지구단위 계획)의 결정

- 도시관리계획(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 조서 : [붙임1]

다.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56조(개발행위의 허가)에 따른 개발 행위허가

7. 관계서류는 속초시 도시안전국 건축과(☎033-639-2456)에 비치하여 일반인이 열람하게 합니다.

[붙임 1]

1. 속초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 조서

가.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 조서

구 분	도면표시 번호	구 역 명	위 치	면 적 (㎡)			비 고
				기 정	변 경	변경후	
신설	46	동명4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	속초시 동명동 464번지 일원	-	증)3,292	3,292	

▣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 사유서

구 분	도면표시 번호	위 치	면 적(㎡)	결 정 사 유
신설	46	속초시 동명동 464번지 일원	3,292	- 주거건설사업계획을 수용한 지구단위계획구역 신설 - 주거환경 개선 및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공동주택 건설을 위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

나.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 조서

1) 용도지역·용도지구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 조서 : 변경없음

가) 용도지역 결정(변경) 조서

구 분	면 적 (㎡)			구성비(%)	비 고
	기 정	변 경	변 경 후		
합 계	3,292	-	3,292	100.0	
제2종일반주거지역	533	-	533	16.2	
일반상업지역	2,759	-	2,759	83.8	

나) 용도지구 결정(변경) 조서

구 분	도면 표시 번호	지구명	지구의 세분	위 치	면적(㎡)	연장(m)	폭원(m)	최초결정일	비 고
기정	1	중심시가 지경관지구	시가지 경관지구	중앙동 471-4대	487,709 (2,597)	-	300~400	2007.11.2. (강고 제2007-236호)	7번 국도 변

※ ()는 지구 내 금회사업 편입 면적임

2)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 조서

가) 교통시설

■ 도로 결정(변경) 조서

구 분	규 모				기능	연장 (m)	기 점	종 점	사용 형태	최 초 결정일	비고
	등급	류별	번호	폭원 (m)							
기정	소로	3	27	6	국지 도로	80	중로1-3 동명398-1도	중로2-33 동명455-1대	일반 도로	-	1977.4.19. (강고제77-72호)
변경	소로	1	94	10	국지 도로	80	중로1-3 동명398-1도	중로2-33 동명455-1대	일반 도로	-	1977.4.19. (강고제77-72호)

■ 도로 결정(변경) 사유서

변경 전 도로명	변경 후 도로명	변경내용	변경사유
소로3-27	소로1-94	◦ 폭원확장 - 폭원 : 6m ⇒ 10m	◦ 주택건설사업으로 인한 인근지역의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도로폭원 확장

3)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구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 조서

가구 번호	면 적(m ²)	획 지			비고
		획지 번호	위 치	면 적(m ²)	
합 계	3,292	-		3,292	
A	2,348	A-1	속초시 동명동 464번지 일원	2,348	주상복합용지
B	811	B-1	속초시 동명동 462-6번지 일원	811	소로1-94
	133	B-2	속초시 동명동 398-1번지 일원	133	도로용지

4) 건축물에 대한 용도·건폐율·용적률·높이·배치·형태·색채·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 조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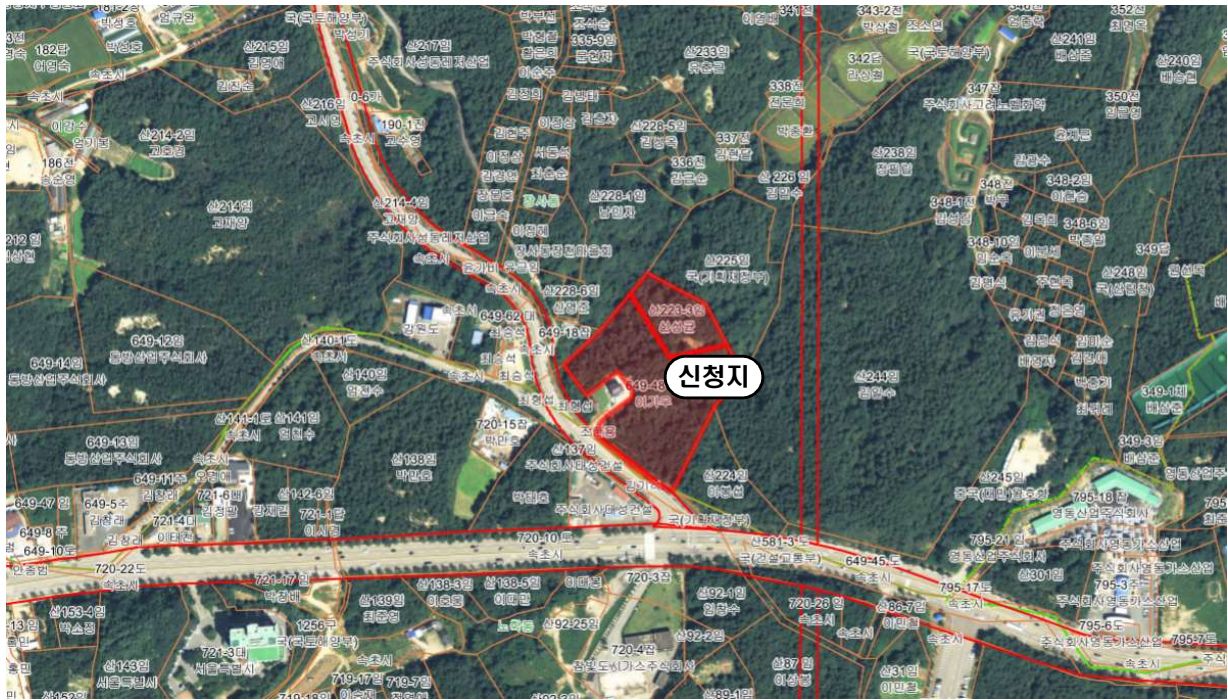
도면 번호	위치	구분	결정내용
A-1	동명동 464번지 일 원	허용용도	「건축법시행령」 제3조의5[별표1] - 제2호의 공동주택 -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-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(옥외철타이 있는 골프연습장 제외)
		불허용도	허용용도 외 용도
		건폐율	제 2 종 일 반 주거지역 60% 이하
			상업지역 80% 이하
		용적률	제 2 종 일 반 주거지역 250% 이하
			상업지역 900% 이하
		높 이	36층 이하
		배 치	- 가로경관 향상, 보행공간 확보 및 대지와 조화로운 연계를 위한 체계적 이고 안정감 있는 건축물 배치 유도 - 대기의 원활한 이동을 위한 건축물 배치, 층수, 간격 등의 적절한 배치 유도
		형 태	경관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모든 건축물의 옥탑층, 주현관, 지붕의 형태가 조화를 이루도록 계획
		색 채	- 주변과의 조화를 고려하고 도시경관에 적합한 색채로 유도 - 대비가 강한 색채는 억제하고 중명도, 중채도의 색으로 자연색과 어울리는 색채 권장
		건축선	건축한계선(공동주택 6m)

5)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 조서

도면번호	위치	구분	계획내용	비고
A	동명동 464 번지 일원	단지내 조경	「건축법」 및 「속초시 건축조례」 등 관련법령에 의한 설치기준 이상 조성	
		차량진출입 허용구간	- 교통영향을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차량진출입허용구간을 지정하여 차량 진출입 유도 - 결정도에 차량출입허용구간으로 표현된 부분에 한하여 차량 진출입을 허용하며 외의 구간은 차량진출입불허	
		공공보행로	- 소로1-94호선(기정 소로3-27호선)에 접한 대지내에 1.5m이상의 공공보행로를 확보 - 공공보행로에는 보행에 지장을 주는 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음(공공시설물 외의 기타시설 설치 금지)	
		주차장 설치기준	「주차장법」 및 「속초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」 등 관계법령에 의한 설치기준 이상의 주차장 확보	

위치도 및 현황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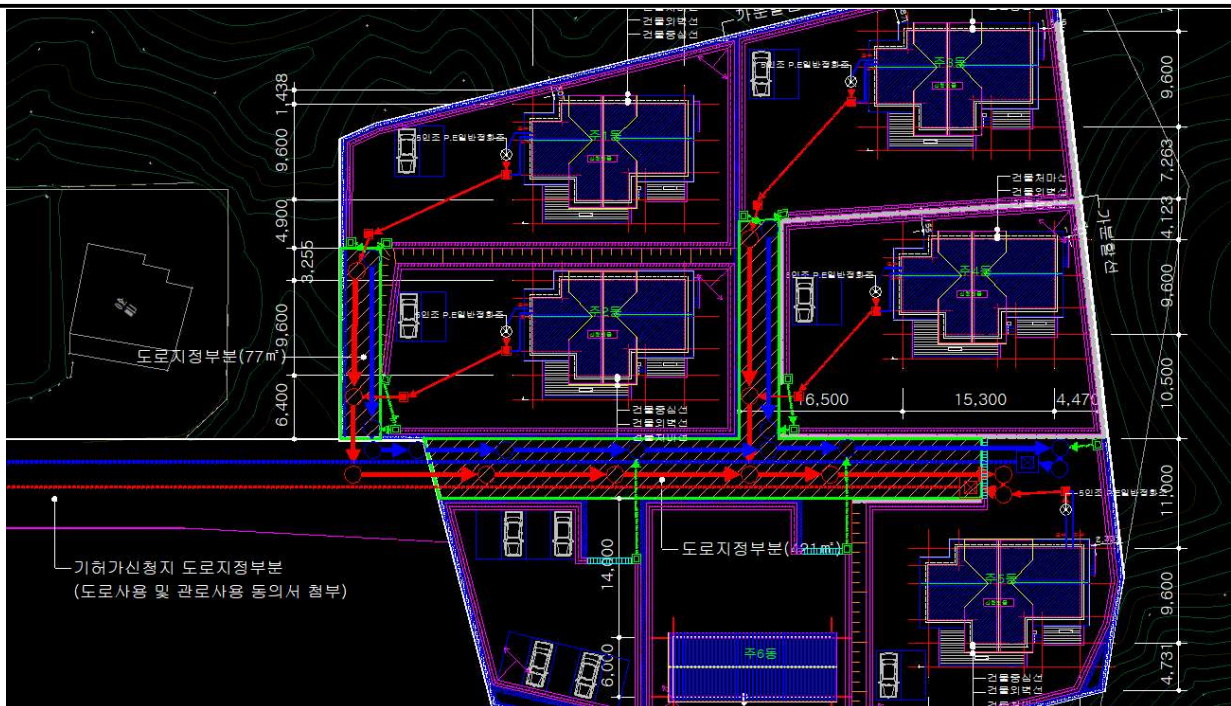
- 위치도 및 현황도를 작성합니다.



위치도

축척

NONE



현황도

축척

NONE

속초 도시관리계획(도로: 소로 2-27호선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

1. 속초 도시관리계획(도로: 소로 2-27호선)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결정(변경)하고, 같은 법 제32조 및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승인 고시합니다.
2. 관계도서는 속초시청 건설도시과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.

2020년 2월 14일
속 초 시 장

- 가. 속초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승인고시조서 : 아래조서 참조
나. 속초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: 실음생략

1.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승인조서

가. 교통 시설

■ 도로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승인조서

구분	규모				기능	연장 (m)	기 점	종 점	사용 형태	최 초 결 정 일	비고
	등급	류별	번호	폭원 (m)							
기정	소로	2	27	8	국 지 도로	402	중로1-1 금호동625-244도	소로3-52 교동627-4도	일반 도로	1977.4.19. (강고 제77-72호)	선형 변경
변경	소로	2	27	8	국 지 도로	402	중로1-1 금호동625-244도	소로3-52 교동627-4도	일반 도로	1977.4.19. (강고 제77-72호)	

■ 도로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승인 사유서

구분	변경전 도로명	변경후 도로명	변경내용	변경사유
변경	소로2-21	소로2-21	○ 선형변경	○ 현황여건 반영을 통한 사유재산권 침해 최소화(기시설물 제척)를 위하여 도로선형 일부 조정

건축허가(신고)시 지정하는 도로 지정 공고

「건축법」 제2조제1항제11호 나목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(신고)시 그 위치를 지정하는 도로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지정·공고 합니다.

2020년 02월 10일

속 초 시 장

1. 공 고 명 : 건축허가에 따른 도로지정
2. 도로위치 : 도로지정 조서 참조
3. 공고기간 : 2020. 02. 14.~ 02. 28.(14일)
4. 도로지정 조서

소재지	지번	지목	면적(㎡)		소유자	건축위치 건축물 용도 허가(신고)번호 (건축허가일) 대표동 399번지 단독주택 2020-건축과-신축신고-2 (2020.01.20.)	비고
			공부 면적	지정 면적			
속초시 대포동	399	전	265	6	윤선열		건축주 : 윤선열

5. 공고방법 : 자치단체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판
6. 관계도서 : 속초시 건축과 비치(열람가능)
7. 문의사항 : 속초시 건축과 건축행정팀(033-639-2769)

위치도 및 현황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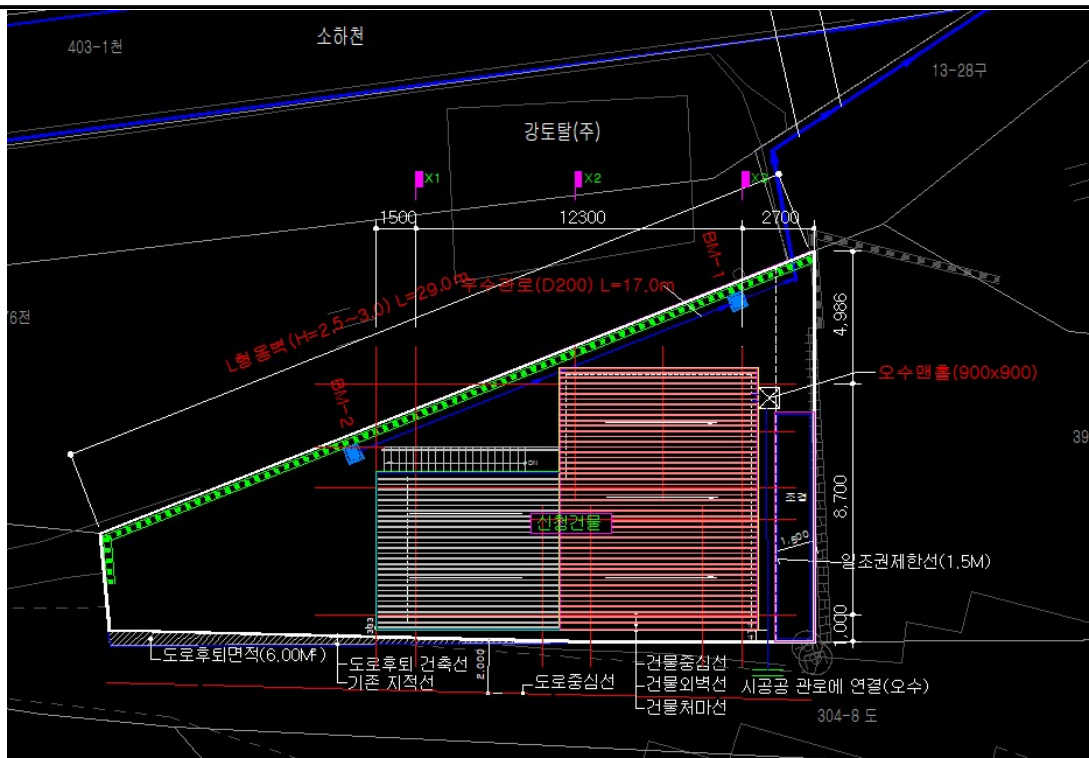
- 위치도 및 현황도를 작성합니다.



위치도

축척

NONE



현황도

축척

NONE